

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9. 17. 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9. 17

다. 상 정 일 자 : 제7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사회위원회(98.9.28)상정.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강명중 총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휴가업무운영 표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휴가관련 복무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분할하여 허가할수 있도록 개정함.
- 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이내의 승선후가를 허가하던 것을 적용대상 공무원이 없어 이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의 무화규정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분할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이 없는 승 선후가 내용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내용상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찬성 4, 반대3)